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

경제의 틀을 바꾸면
미래가 달라집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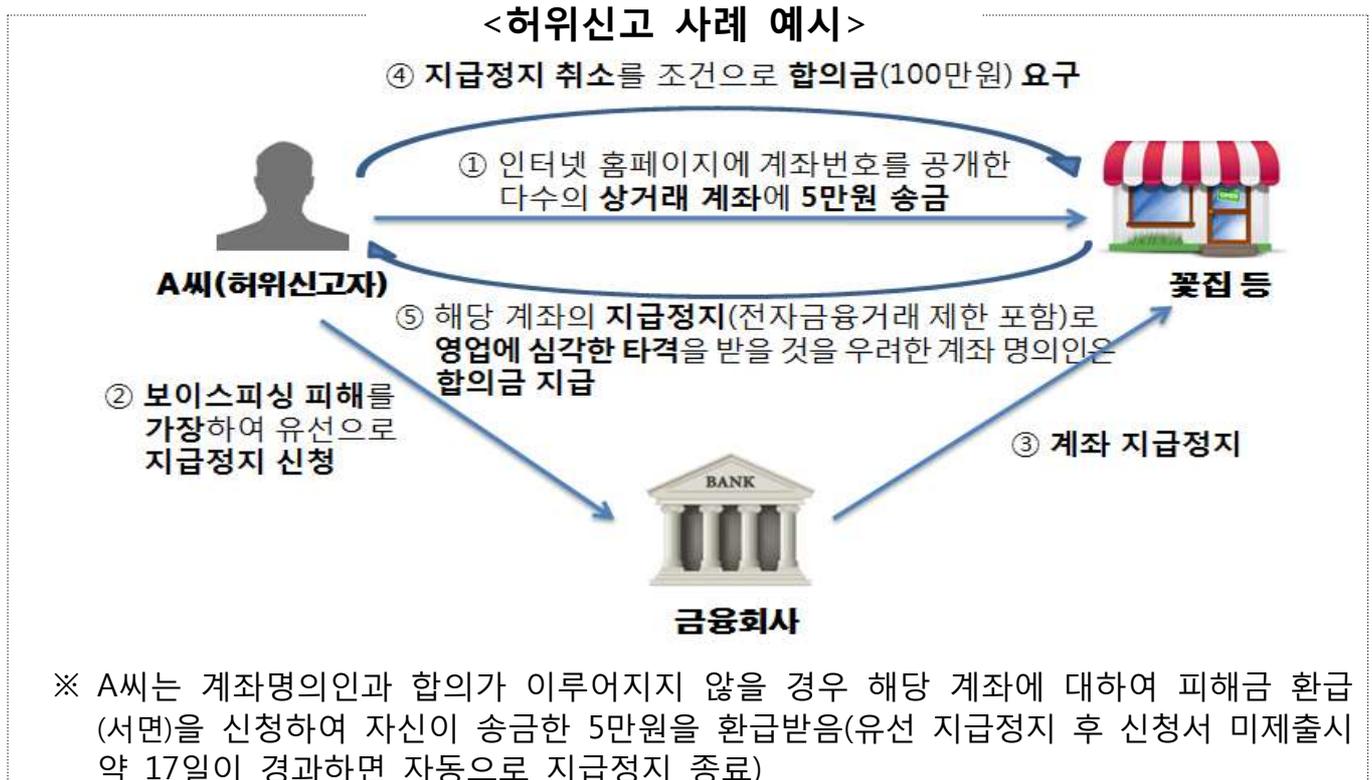
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

	보 도 자 료		
	보도	2017. 3. 22.(수) 조간	배포 2017. 3. 21.(화)
담당부서	불법금융대응단	김범수 팀장(3145-8521), 이수인 선임(3145-8522)	

제 목 :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적극 구제하되 허위신고에는 엄정 대응

1 개요

-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유선상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현행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하여
- 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을 입금시킨 후 지급정지를 신청하고,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청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



- 피해구제 제도를 개인의 불법적인 목적에 악용하는 사례에 따라 행정력이 낭비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,
 - 금감원은 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음

2 허위신고 현황

- '14년~'16년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허위 신고자로 의심되는 자는 총 70명이며,
 - 이들의 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수는 총 6,922개임

허위신고 의심자 현황

(단위 : 명, 개, 천원)

지급정지 신청(유선)			피해구제 신청(서면)		
건수	인원	계좌	인원	계좌	평균금액
20-39회	34	1,993	15	299	1,683
40-59회	20	2,057	8	237	468
60-79회	9	1,361	4	122	1,440
80-99회	4	570	2	41	3,606
100회 이상	3	941	3	23	725
합계	70	6,922	32	722	1,322

- 지급정지된 6,922개 계좌 중 채권소멸절차* 진행을 위하여 허위신고 의심자들이 서면신청서를 제출한 계좌는 722개(10.43%)에 불과

*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

- 나머지 6,200개 계좌는 합의금 등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시킨 것으로 추정

- 피해구제(서면)를 신청한 722개 계좌의 피해구제 신청금액도 소액(평균 1,322천원)으로 이들은 소액 입금 후 합의금을 요구

* '16년 전체 계좌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평균금액은 4,195천원

<붙임 1> 「보이스피싱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제도」

3 조치 현황

□ 금감원은 허위신고 의심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정보제공 등 공조하고 있으며,

○ 현재 수사기관에서 허위신고자 4명을 구속 수사* 중이고, 추가적인 구속 수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

* 허위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허위신고자는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」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, 그 밖에 사기, 공갈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

<붙임 2> 수사기관이 구속 수사 중인 허위신고 사례

4 향후 대응방안

□ 금감원은 다양한 허위신고 사례를 찾아내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,

○ 금융회사가 다수·반복적인 지급정지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피해구제 신청서 접수시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(증빙서류 포함)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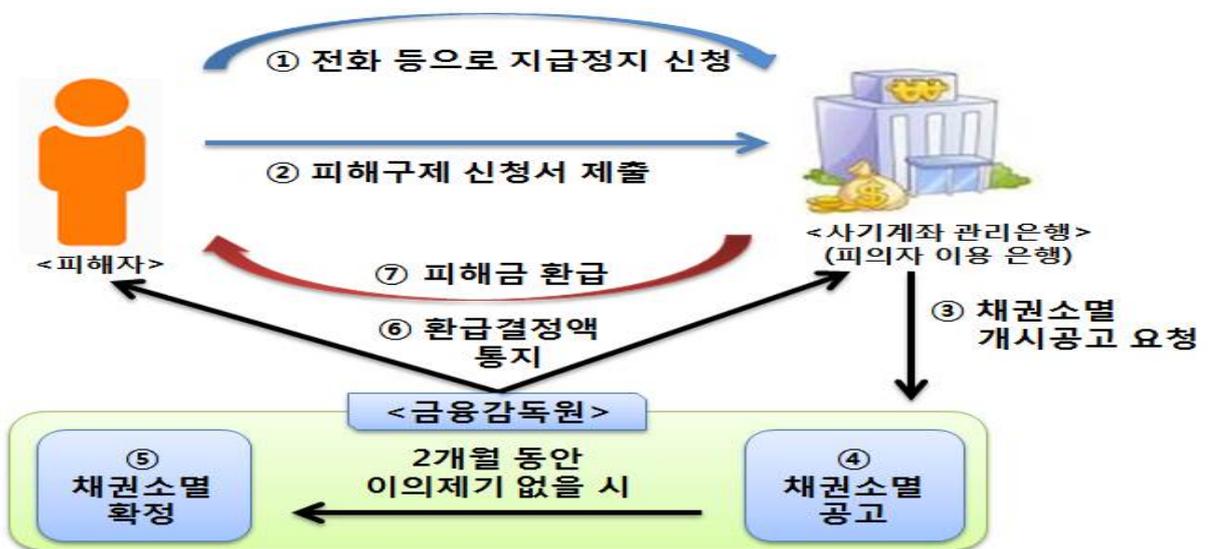
○ 아울러 허위신고자에 대한 「금융질서문란행위자」 등록을 검토하여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도록 추진할 예정

* 신규 대출 거절, 신용카드 한도 축소·이용 정지,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시 불이익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- 금감원은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해 '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'를 운영 중
 - 이 제도를 이용하면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(유선으로 가능)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*할 수 있음
 - *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된 계좌(사기이용계좌)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음
 -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가 접수되면 ①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→ ②채권소멸 개시공고(2개월) → ③채권소멸 확정 → ④환급액 결정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하게 됨
 -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소명되는 경우 피해구제 절차는 종료
 - 또한,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피해구제 절차는 종료

보이스피싱 피해시 구제 절차



[사례예시 1]

- 피의자 A씨는 **인터넷 메신저**를 이용하던 중 **보이스피싱**(지인을 사칭하며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인 “메신저 피싱”)으로 **피해**를 입었다며 **42회 금융회사에 유선**으로 **지급정지를 신청**
 - **금융회사**가 **허위신고를 의심**하여 지급정지를 해주지 않자, 금융감독원에 **민원**을 넣겠다고 **협박** 등을 하여 결국은 해당 계좌를 **지급정지** 시킴
 - **계좌명의인들**에게 **지급정지 취소**를 조건으로 **합의금**을 요구하여 이 중 **16명**으로부터 **1,100만원**을 갈취
- ※ A씨는 계좌명의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하여 피해금 환급(서면)을 신청하여 자신이 송금한 금액 1,574만원을 환급받음

[사례예시 2]

- 피의자 B씨는 **도박 사이트 운영자** 등 **12명**의 계좌(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번호 확인)로 **5만원**씩 보낸 뒤 **보이스피싱**을 당했다며 **허위로 지급정지 신청**
 - B씨는 **계좌명의인들**에게 **지급정지 취소**를 조건으로 **합의금**을 요구하여 이들로부터 **약 1,000만원**을 갈취
- ※ 계좌 명의인이 **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** 등이기 때문에 **이의제기**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